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65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6591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5319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론 종결2021. 9. 9.

판결 선고2021. 11. 4.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5319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7. 6. 27.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21,224,900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2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혜진

판사이선희

판사김평호

별지